

■ 4.3 졸업 기준

■ 설명

(설명3) 단일인증제 시행에 관한 규정:

- 단일인증프로그램은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이 프로그램에서 정한 졸업요건(인증요건 포함)을 충족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임.
- 2016년 입학생부터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임을 입학요강 등 공식적인 공개 자료에 명기하고, 학칙(또는 인증규정)에 반영하여야 함.
- 복수·연계전공자, 편입생, 전과·부생,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같이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의 특수한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증제 참여 예외인정조항을 두고 적용할 수 있으나, 적용범위를 최소한으로 설정하여야 함.
- 예외인정조항 적용자는 최종적으로 졸업 1년 전까지 인증프로그램 이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복수·연계전공 등으로 예외인정조항을 적용받는 학생의 경우, 졸업시점에서 복수·연계전공 등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이 유보되어야 함.
- 예외인정조항 적용 졸업생들의 학위 명칭은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의 학위 명칭과 구분되어야 함.
- 가능하면 예외인정조항을 두지 않고 단일인증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.